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 12. 10.)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1)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가산금, 항공수당, 합정근무수당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을 조정함(안 별표 11)
- 2)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5.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을 “조례로, 시·도 소속 소방
공무원은 시·도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을 “「소방공무
원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4호나목 중 “(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
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소방공무원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8항, 제15조제5항제1호, 제7항 및 제24조 중 “소속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2. 제7조의2제10항, 제10조제6항·제10항, 제11조의3제7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제11조제3항 중 “소속 기관장” 및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3. 제7조의2제5항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 영 시행 이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소방공무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1 제1호 지급대상란 4) 중 “조작업무”를 “조작업무,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로 하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6·7급 및 소방경·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나) 8·9급 및 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같은 표 제3호가목2)나)(1)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소방공무원 함정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 함정장에 대하여는 월 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별표 11의 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 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 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6·7급,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 (3) 8·9급,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나)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 11의 제3호바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화재조사 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이 영 시행 이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1) 가) 나)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	---

적용받은 소방공무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 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 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 조사 업무담당자에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 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 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 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 조사 및 파출소 잠수·구조요원)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 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 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019년을 평가대
상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적용한다.

별표 15 비고 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 월 300,000원
- 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1) 소방정·소방령 : 월 200,000원
 - 2) 소방경 이하 : 월 100,000원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수지급무수당) ①·② (생략)	제12조(특수지급무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특수지급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급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	③ ----- ----- ----- ----- ----- ----- ----- ----- ----- ----- ----- ----- ----- ----- <u>조</u> <u>례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u> <u>은 시·도 조례로, 그 밖</u> ----- ----- ----- ----- -----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생략)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략)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
0조의3제1항, 「소방공무원 임
용령」 제30조의4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	-----
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	-----
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	-----
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	-----
의3·제57조의3제1항, 「별정직	-----
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	-----
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	-----
9조의5제1항 및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소
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	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	항-----
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	-----
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	-----
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	-----
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
비례하여 지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소방공무원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 용령」 제3조에 따라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임 용권을 행사하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 항·제4항·제8항, 제15조제5 항제1호, 제7항 및 제24조 중 “소속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 본다. 2. 제7조의2제10항, 제10조제6 항·제10항, 제11조의3제7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 기관의 장”과 제11조제3항 중 “소속 기관장” 및 “소속 기관 장 또는 소속 장관”은 “소방기 관의 장”으로 본다. 3. 제7조의2제5항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9